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353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박용갑·장종태·정준호
이재관·문진석·서삼석
허영·황명선·김윤
소병훈·윤종균·윤준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는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에 달하며,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를 포함할 경우, 위기가구는 전국에 122만 9,144가구에 달하여 관리비 지원 등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임차료”를 “임차료, 관리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 한 <u>임차료</u>, 수선유지비, 그 밖 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생 략)</p> | <p>제11조(주거급여) ① ----- ----- <u>임차료, 관리비,</u> ----- ----- -----.</p> <p>② (현행과 같음)</p> |